

평창군 하수도 사용조례안

의안 번호	//
----------	----

제출년월일 : 2006. 8.
제출자 : 평창군수

1. 제안이유

- 공공하수도 시설의 유지관리 및 하수도사용료 및 원인자부담금등의 부과징수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하수도법 제 18조의 위임규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배수설비 설치신고 및 준공검사 (안 제4조 내지 제5조)
 - 배수설비 공사완료시 전·중·후 사진을 첨부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함
- 나.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별표1의 요율에 의함 (안 제11조 및 별표1)
- 다. 수도사용자인 경우 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봄.(안 제12조)
- 라.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안 제14조)
 - 하수도사용료는 수도급수사용료와 납기를 같이하며, 수도급수사용료 납부 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징수함
- 마.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및 산정방법 (안 제16조)
 - 하수종말처리장 사용개시이후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오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을 원인자부담금으로 부과함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별첨
- 나. 입법예고 : 실시(2.27 ~ 3. 8)결과, 의견 제출사항 없음
-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없음
- 라. 관련부서 협의 : 평창군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필('06.1.23)

평창군 하수도 사용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동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용자"라 함은 공공하수도에 의하여 하수를 배제하는 자, 하수를 배제 하는 시설 또는 대지의 소유자·관리자 등을 말한다.
2. "배수설비"라 함은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배수관, 배수거, 기타의 배수시설(이하 "배수설비"라 한다)을 말한다.
3. "배수설비설치자"라 함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개시 공고된 공공하수도의 배수구역내에서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토지, 건물의 소유자 또는 공공시설물의 관리자를 말한다.
4. "점용자"라 함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시설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자를 말한다.
5. "차집관거"라 함은 청천시의 하수나 우천시 일정량의 하수를 차집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로 배제하기 위한 관거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공사시행) ①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이설·개조·수선 또는 철거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어 개선명령 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아니할 때
3. 배수설비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공사를 할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

④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군수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선납금을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결과 과부족액이 발생한 경우 이를 환불 또는 추징하여야 한다.

제4조(배수설비의 시공) ①배수설비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군수는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시공업자 중에서 공사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5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설치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배수설비준공검사 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준공검사 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설치자의 신고사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배수설비의 관리) ①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의 개축, 수선 및 유지관리는 그 설치자가 하여야 한다.

②배수설비설치자는 배수설비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누수, 주위의 오염발생 또는 공공하수도의 기능장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중지·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

용 할 때

2. 지하수·하천수·온천수·기타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기타 배출되는 하수의 양태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요금의 적용구분과 달라졌을 때
- ②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설치신고 및 「평창군수도급수조례」에 의한 급수사용개시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8조(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기타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하수관거 준설 등) 군수는 하수관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거상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하수관거의 청소 및 준설은 2년에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지여건상 준설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시 준설을 할 수 있다.

제10조(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준공 등) ①점용자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다른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점용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 다른 시설 또는 공작물을 제거하고 공공하수도를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사용료) ①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해서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개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②공공하수도사용료는 공공하수도사용자로부터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의 요율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우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군수는 별표 1에 의한 하수도사용료외에 별표

2에 의한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하수배출량의 인정) ①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수도사용자(전용수도 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②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하수도업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의하여 확정한다.

1.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2. 하천수, 온천수, 기타의 경우에는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양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

③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제13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군수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인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1일 100톤 이상의 하수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하게 하여야 하며, 계측장치 설치후 봉인은 군수가 한다.

②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계측장치의 설치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 할 수 없으며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시에도 또한 같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량 측정기를 설치

한 경우에는 동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⑤계측장치 설치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 설치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수도급수사용료와 납기를 같이하며, 수도급수사용료 납부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다.

③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신고신청서에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 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한다.

④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한 사용료 부과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부과당월 기준 이전 3월분을 평균하여 부과징수한다.

제15조(점용료) ①군수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점용허가 할 때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②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그 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미만일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하고, 1월미만일 때에는 1월로 계산한다.

③점용료는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각 연도분을 그 연도의 1월중에 징수하되, 허가시에는 그 연도분을 선납하게 한다.

④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⑤ 군수는 정당한 사유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6조(원인자부담금) ①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도(하수관거 및 펌프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신·증설에 필요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 환경평가비, 용지비(지장물보상비 포함), 공사비(부대공

사비 포함), 시공감리비, 기타 부대비로 한다. 다만, 하수관거는 개발 지역에서 하수종말처리시설까지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거설치비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별표 4와 같이 산정한다.

1. 군수는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인·허가 사항이 법 제32조제4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배수설비의 계획하수량이 당해 배수설비가 공공하수도에서 접속되는 곳에서의 공공하수도 계획수량의 10분의 1 이상의 하수를 배제할 수 있는 배수설비를 설치함으로써 인하여 공공하수도(하수관거, 하수종말처리시설, 펌프장)의 개축이 필요하게 될 때에는 그 비용의 3분의 2이상을 배수설비설치자에게 부담시켜야 한다.

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신고량

나.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량

다. 「수질환경보전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방지사설의 설치시 승인된 량

2. 군수는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요하는 비용의 전부를 당해 타공사의 시행자 또는 타행위자가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가. 타공사에 의한 공공하수도 공사 : 타공사로 인하여 공공하수도 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는 다음과 같음.

1) 상수도관, 가스관, 통신관, 전주 등 설치공사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이설·보수·개수 등이 필요한 경우

나. 타행위에 의한 공공하수도 공사 : 공공하수도 이외의 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는 다음과 같음.

1) 도시의 개발사업(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주택건설촉진법, 도시재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도시공원법 등)

2) 산업입지및공업단지조성사업(국가공업단지조성, 지방공업단지조성, 농공단지조성, 중소기업단지조성, 수출자유지역조성, 공장부지조성 등)

3) 관광단지의 개발사업(관광지 및 관광단지조성, 온천단지, 공원집단 시설지구 등)

4) 기타 법 제5조의2 규정에 의한 하수도정비계획이나 도시계획상 하수처리 구역으로 정하는 것이 불합리한 지역중 타행위자가 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시키도록 요청하여 공공하수도의 신·증설이 필요한 경우

3. 군수는 법 제32조제3항에 의한 공공하수도를 손괴시킬 행위를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의 수선 또는 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그 행위자가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가. 상수도관, 가스관, 통신관, 전주 등의 매설 및 이설공사시 공공하수도를 파손 또는 훼손하는 경우

4. 군수는 법 제32조제4항에 의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이후에 그 하수처리구역안에서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오수정화시설 및 단독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해당 건축물의 하수량(건물 등의 증축·용도변경으로 인하여 하수량이 증가한 경우에는 그 증가량을 말한다)에 대하여 별표 4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용의 부담액과 해당 건축물의 오수처리시설 설치비용(합류식 하수관거 지역으로 단독정화조를 설치한 경우에는 오수처리시설 설치비용에서 단독정화조 설치비용을 제외한 비용) 또는 단독정화조 설치비용을 비교하여 적은 비용의 전액을 원인자부담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배수설비의 계획하수량이 제2항제1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거비용은 이를 추가로 산정·합산하여 부담시켜야 한다.

가. 오수를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처리하는 경우

나. 수세식변소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우·오수 분류식 하수도를 통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처리하는 경우

③군수는 원인자부담금 부과를 위하여 매년 2월말까지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군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하수발생량 산정방법(당해사업의 기본 또는 실시설계보고서상의 수량,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5조 별표 3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 별표 5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단독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

2. 별표 4의 산정방식에 따른 m^3 당 원인자부담금 부과액

3.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규모별 설치비용

④원인자부담금은 원칙적으로 당해사업 또는 시설물의 착공후부터 완공

전에 현금으로 징수하며 징수절차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가산금) ①군수는 공공하수도의 사용료·점용료·원인자부담금 기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납부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1월이 경과할 때마다 납부된 금액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증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증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18조(감면) 군수는 공익상 기타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료, 점용료, 기타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19조(부과액 조정 신청) ①사용료·점용료·원인자부담금 기타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납부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군수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군수는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 하여야 한다.

제20조(지방세법의 준용) 사용료·점용료·원인자부담금 기타 납부금의 부과 및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법」의 예에 따른다.

제21조(사용의 제한) ①군수는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고자 하는 날부터 늦어도 3일 전에 그 구역 및 기간을 일간신문에 공고하거나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한 경우에는 사후에 공고할 수 있다.

제22조(과태료) ①법 제4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과태료 체납처분에 관한 절차는 「지방세법」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이외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설치하였거나 설치중인 배수설비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하였거나 설치중인 것으로 본다

하수도사용요금표(제11조 관련)

업종	구분	기본요금 (원)	사 용 요 율	
			사용구분 (㎡/월)	㎡당 단가 (원)
가 정 용		680	1 ~ 10	160
			11 ~ 20	176
			21 ~ 30	194
			31 ~ 40	213
			41 ~ 50	234
			51이상	258
업 무 용		1,978	1 ~ 20	232
			21 ~ 50	255
			51 ~ 100	281
			101 ~ 300	309
			301이상	339
영 업 용		4,522	1 ~ 30	360
			31 ~ 50	396
			51 ~ 100	436
			101이상	479
목 탕 용	1 종	24,770	1 ~ 200	224
			201 ~ 300	247
			301 ~ 500	271
			501이상	298
	2 종	61,930	1 ~ 200	345
			201 ~ 300	380
			301 ~ 500	418
			501이상	460
산 업 용				585

- 주) 1. 단일시설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가 발생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며, 주된 하수가 불분명할 경우 하수도사용요율이 높은 업종의 사용요율을 적용함.
 2. 기본요금은 기본적 행정경비 등을 고려하여 적용함.

[별표 1-1]

하수도사용업종별 구분표(제11조 관련)

업종		구분내용
가정용		○평창군수도급수조례에 규정된 업종구분표의 가정용 해당업종
업무용		○평창군수도급수조례에 규정된 업종구분표의 업무용 해당업종
영업용		○평창군수도급수조례에 규정된 업종구분표의 영업용 해당업종
욕탕용	1종	○평창군수도급수조례에 규정된 업종구분표의 욕탕용 1종 해당업종
	2종	○평창군수도급수조례에 규정된 업종구분표의 욕탕용 2종 해당업종
산업용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체

- 주) 1. 상기 업종에 사용한 물은 상수도수, 지하수 및 기타수 등에 관계없이 해당 하수도 업종을 적용한다.
2. 영업용중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체는 산업용으로 적용한다.
3. 상기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업종에 대하여는 해당 유사업종으로 분류 적용한다.

[별표 2]

수질 하수도사용료 산정방법(제11조 관련)

□ 대상항목 : BOD 또는 COD,SS

□ 사용료 산정기준

○수질하수도사용료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계기준 농도에서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농도를 뺀 값으로 산정한다(시행령 제17조 제1항제1호)

○BOD 또는 COD값중 큰 값을 적용하여야 하며, SS값은 그대로 적용한다.

○폐수배출량은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유량계 및 각종계량기에 의거 산정한다.

□ 수질하수도 사용료

○수질하수도사용료 = 오염부하량 [수질초과농도(mg/l)× 시간당 폐수출량 (m³)] × 1/1000 × kg단가 × 1일 조업시간 × 30일

※ 1일 조업시간은 측정하기전 최근 조업한 30일간의 배출시설의 조업시간 평균치로서 분으로 표시

[별표 3]

하수도점용료 산정기준(제15조 관련)

구 분	산 정 기 준
1. 도로, 철도, 궤도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위한 점용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6
2. 영리목적으로 하는 시설물의 설치를 위한 점용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10
3. 택지 또는 상가로 하는 점용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10
4. 기타 사유로 인한 공공하수도의 점용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8

[별표 4]

원인자부담금 산정방식(제16조 관련)

□원인자부담금 = 하수종말처리시설원인자부담금 + 하수관거원인자부담금

○하수종말처리장 원인자부담금

$$= \text{m}^3\text{당 원인자 부담금(원/m}^3\text{)} \times \text{하수발생량(m}^3\text{/일)}$$

※ m³당 원인자부담금

$$= \text{하수종말처리시설 총사업비} \times \frac{1}{\text{하수종말처리시설용량(m}^3\text{/일)}} \times \alpha$$

※ 총사업비는 조례 제16조제1항에 의하여 산정한 비용으로 지방양여금, 지방비를 포함한 금액으로 함

○하수관거 원인자부담금

$$= \text{하수관거 총사업비} \times \frac{\text{개발지역내 발생하수량(m}^3\text{/일)}}{\text{하수관거의 계획하수량(m}^3\text{/일)}} \times \alpha$$

※ 총사업비는 조례 제16조제1항에 의하여 산정한 비용으로 지방양여금, 지방비를 포함한 금액으로 함

$$\alpha: \left(1 + \frac{\text{공공하수도 설치완공이후 년평균 생산자 물가상승률}}{100}\right)^n$$

n : 공공하수도 설치완료이후 경과년수

[별표 5]

위반행위 종류별 과태료 부과기준(제23조 관련)

(단위 : 만원)

위 반 행 위	해당법조문	과태료
1.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행한 자 ①허가없이 공공하수도를 설치한 자 ②허가없이 공공하수도를 개축 또는 수선한 자	법 제42조 제1항제1호	100 80
2. 법 제20조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시설 또는 공작물을 설치한 자 ①설치면적 1,000㎡ 이상 ②설치면적 500㎡ 이상 ~ 1,000㎡ 미만 ③설치면적 250㎡ 이상 ~ 500㎡ 미만 ④설치면적 100㎡ 이상 ~ 250㎡ 미만 ⑤설치면적 100㎡ 미만	법 제42조 제1항제2호	100 80 60 40 20
3.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하수를 배제한 자 ①하수도배출량 50㎡/일 이상 ②하수도배출량 20㎡/일 초과 ~ 50㎡/일 미만 ③하수도배출량 10㎡/일 초과 ~ 20㎡/일 미만 ④하수도배출량 1㎡/일 초과 ~ 10㎡/일 미만 ⑤하수도배출량 1㎡/일 이하	법 제42조 제1항제2의2호	100 80 60 40 20
4.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시행·중지·변경명령에 위반한 자 ①위반행위 3회 이상 ②2회 위반 ③1회 위반	법 제42조 제1항제3호	100 80 60
5. 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출입·사용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①위반행위 3회 이상 ②2회 위반 ③1회 위반	법 제42조 제2항제2호	50 30 10
6.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①신고 미이행 ②변경신고 미이행	법 제42조 제2항제3호	50 30
7.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등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①위반행위 3회 이상 ②2회 위반 ③1회 위반	법 제42조 제2항제4호	50 30 10

※위반행위가 2이상에 해당할 때는 각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액을 합산한다.

관계 법령 발췌

1. 지방자치법

제127조 (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29조 (분담금)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주민의 일부가 특히 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이익을 받는 자로부터 그 이익의 범위안에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130조 (사용료의 징수조례등) ①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2. 하수도법

제5조의2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①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수는 사람의 건강을 보호함에 필요한 공중 위생 및 생활환경의 개선과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한 수질환경기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관할구역내의 하수의 유역별로 하수도의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이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시계획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기본계획이 승인된 도시에서는 이를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②하수도가 2이상의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의 관리구역에 걸쳐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당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하수도의 정비에 관한 기본방침
2. 하수도에 의하여 하수를 배제 또는 처리하는 구역에 관한 사항
3. 하수도의 기본적 시설의 배치·구조 및 능력에 관한 사항
4. 하수도정비사업의 실시순위에 관한 사항

4의2. 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의 재이용계획 및 재이용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4의3. 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하수를 처리하는 과정에 발생된 오니의 처리계획 및 처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5. 환경부장관이 하수도의 정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환경부장관이 제4항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⑥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20년을 단위로 하여야 하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후에는 5년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타당성여부를 검토하여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⑦환경부장관은 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정당한 사유없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제9조 (사용의 공고등) ①공공하수도관리청이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용개시년월일·배수구역(하수종말처리시설일 경우에는 그 하수처리구역)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공고하고, 관계도면을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②공공하수도관리청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의 하수처리구역안의 하수관거가 오수·빗물이 같이 흐르는 합류식관거이고, 그 배제된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는 경우에는 그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이전에 설치되어 가동중인 오수처리시설을 단독정화조로 대체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3조 (비관리청의 공사시행등) ①공공하수도관리청이 아닌 자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를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유지는 허가없이 이를 할 수 있다.

제18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 (점용허가)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시설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1조(사용료등) ①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은 공공하수도에 관한 비용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③제1항의 사용료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의 공고를 한 후가 아니면 징수할 수 없다.

제23조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등) ①공공하수도관리청 또는 그 명령에 의하거나 위임을 받은 자는 공공하수도에 관한 조사·측량·공사 또는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특별한 용도가 없는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통로 또는 가도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죽림 기타의 장애물(이하 "장애물등"이라 한다)을 제거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당해 토지의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거나 장애물등을 제거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통지하고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미리 통지하기 곤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일출전 일몰후에는 당해 토지의 점유자의 승인없이는 택지 또는 담이나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④토지의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 또는 사용을 거부 또는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4조(배수설비의 설치등) ①공공하수도의 사용이 개시된 때에는 배수구역 내의 토지소유자(그 토지위에 건축물이 있을 때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자)또는 공공시설물의 관리자는 그 배수구역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켜야 하며, 이에 필요한 배수관·배수거 기타의 배수시설을 설치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질 또는 양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배제하기 위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하는 자는 당해 하수의 수질 또는 양, 배수설비사용개시등에 관한 사항을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된 하수의 수질과 양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의 설치자가 그 설치공사를 완료한 때

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7조 (배수설비등의 검사) 공공하수도관리청이나 그 명령 또는 위임을 받은 자는 배수설비나 제해시설을 검사할 수 있으며, 검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배수구역안의 타인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출입에 관하여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2조 (원인자부담금등) ①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 이상의 하수를 배제할 수 있는 배수설비를 설치함으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개축이 필요하게 된 때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당해 배수설비를 설치한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②공공하수도관리청은 타공사 또는 타행위(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공사외의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요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타공사의 시행자 또는 타행위자에게 부담시키거나 당해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를 손괴시킬 행위를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의 수선 또는 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행위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④공공하수도관리청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이후에 그 하수처리구역 안에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그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하수도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으로 부담시킬 수 있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부담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7조 (감독등) ①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0조·제13조·제20조 및 제24조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의 취소, 공사의 중지·변경·시행등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②공공하수도관리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공공하수도의 보전이나 상황의 변경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
3. 공공의 이익이 될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2조 (과태료)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행한 자.
- 1의2.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자로서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수질검사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2.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시설 또는 공작물을 설치한 자
- 2의2.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하수를 배제한 자
3.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관리청의 명령에 위반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삭제
2.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출입·사용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3.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등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하수도법시행령

제16조 (배수설비의 설치등)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관·배수거 기타의 배수시설(배수를 위한 기계설비를 포함하며, 이하 “배수설비”라 한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배수설비 설치신고서를 건축허가신청시에 공공하수도관리청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배수설비의 종류 및 물량

2. 배수설비설계서
3. 공사실시의 방법 및 시공자
4. 공공하수도시설의 복구방법

4. 지하수법

제7조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①지하수를 개발·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연히 흘러나오는 지하수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시행하는 사업 등으로 인하여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지하수를 이용하는 경우
2. 동력장치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가정용 우물 또는 공동우물을 개발·이용하는 경우
3.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경우
4. 삭제 <2001.1.1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 실시하는 지하수영향조사를 받은 후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 작성한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허가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기본계획 및 지역관리계획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취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

1. 지하수의 채취로 인하여 인근지역의 수원의 고갈 또는 지반의 침하를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주변시설물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나 자연생태계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지하수의 적정관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그 밖에 공공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4. 기타 지하수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④시장·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함에 있어서 특히 지하수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준공검사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할 수 있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허가받은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지하수개발·이용이 제8조제1항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지하수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

⑦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영향조사의 항목·조사방법·평가기준,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작성지침·작성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지해수개발·이용의 신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할 수 있다.

1.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방·군사시설사업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에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2.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 및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어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3. 재해 기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긴급히 지하수를 개발·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4. 전시 기타 비상사태의 발생에 대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상급수용으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한 사항의 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지하수개발·이용이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이 제7조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 실시한 지하수영향조사를 받아 그 결과를 토대로 취수량 및 취수기간을 제한할 수 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명령 또는 이용중지·공동이용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개발·이용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5. 건축법

제18조 (건축물의 사용승인) ①건축주는 제8조·제9조 또는 제15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2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별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를 첨부(제

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에 한한다)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건축주에게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권자는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6.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①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변경허가를 받고자 하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가 제1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방지사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환경부장관은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 특별대책지역 및 그 상류지역,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호소 및 그 상류지역,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 및 그 상류지역의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로 인하여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주민의 건강·재산, 동·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변경을 포함한다)를 제한할 수 있다.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환경부장관은 지역별 제한대상 시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⑧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환경부령이 정하는 특정수질유해 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은 배출시설의 설치제한지역에서 폐수무방류배출시설로 하여 이를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 (방지시설의 설치등) ①제1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변경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변경신고를 한 자(이하 "사업자"라한다)가 당해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그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제8조의 배출허용기준이하로 배출되게 하기 위한 수질오염방지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폐수를 배출하지 아니하고 처리할 수 있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배출시설(폐수무방류 배출시설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오염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폐수의 처리방법 등 배출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이하 "준수사항"이라 한다)을 지켜야 한다.

③환경부장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제2항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제1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④사업자는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제외한다)로부터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공동처리를 위한 공동방지시설(이하 "공동방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사업자는 사업장별로 해당 오염물질에 대한 방지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⑤사업자는 공동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할 때에는 당해 시설의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그 대표자를 두어야 한다.

⑥공동방지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 ①사업자(제10조제1항 단서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사업자를 제외한다)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방지시설 운영기구의 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 배출하거나 방지사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 방지사설에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3.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공정중에서 배출되지 아니하는 물 또는 공정중에서 배출되는 오염되지 아니한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되는 오염물질이 방지사설의 최종방류구를 통과하기 전에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다만, 환경부장관이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오염방지공법상 희석하여야만 오염물질의 처리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기타 배출시설 및 방지사설을 정당한 사유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 ②제10조제1항 단서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나오는 폐수를 사업장밖으로 반출 또는 공공수역으로 배출하거나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오수 또는 다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와 혼합하여 처리하거나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3.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재이용하는 경우 동일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재이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배출시설에서 재이용하거나 화장실용수·조경용수 또는 소방용수 등으로 사용하는 행위
- ③사업자 또는 방지사설을 운영하는 자는 조업을 할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배출시설 및 방지사설의 운영에 관한 상황을 사실대로 기록하여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 ④사업자 또는 방지사설을 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배출시설 또는 방지사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7.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조 (배출허용기준) 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이하 "폐수종말처리시설"이라 한다) 또는 「하수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이하 "하수종말처리시설"이라 한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시키는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그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항목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8.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5조 (오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개정 1999.8.9>)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 오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제15조관련)

1. 오수처리시설의 규모는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건물 기타 시설물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모두 처리할 수 있는 규모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오수발생량의 산정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용도별 오수발생량의 산정방법에 의한다.

제21조 (단독정화조의 설치기준)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단독정화조의 설치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5] 단독정화조의 설치기준(제21조관련)

1. 단독정화조의 규모는 처리대상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규모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처리대상인원의 산정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